

##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(제21조제3항 관련)

|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  | 평가 점수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
| 50% 이상         | 5.0   |    |
| 45% 이상~ 50% 미만 | 4.0   |    |
| 40% 이상~ 45% 미만 | 3.0   |    |
| 35% 이상~ 40% 미만 | 2.0   |    |
| 35% 미만         | 1.0   |    |

- ※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평가점수는 조정 가능하며 단독입찰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름
1.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 부여
  2.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최고 등급을 부여
  3.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'0'점 부여
  4.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'0'점 부여